



공직유관단체 사규 부패영향평가 교육 개요



☐ 추진목적

- 부패영향평가 실무능력 배양으로 자율적 부패영향평가 활성화
- 심의·의결위원회 등 개선과제 이행의 효과성 제고

☐ 개 요

- 일 시 : 5월 3일(화), 13:30~18:00
- 장 소 : 현대빌딩 지하 2층 대강당 (서울 종로구 계동)
- 참가대상 : 116개 기관 사규 부패영향평가 담당자

☐ 주요 내용

- 부패영향평가 제도 및 평가기법 소개
- '11년 부패영향평가 추진방향 및 사규 공개 등 시책평가 관련 질의응답
- 개선과제 및 이행요령 설명
- 부패영향평가 관련 권익위 협조사항에 대한 의견수렴



진행 순서



시 간		행 사 내 용	비 고
13:30~14:00	30	참석자 등록	진행본부
14:00~14:10	10	인사말씀	부패방지 부위원장
14:10~14:50	40	부패영향평가 제도 소개 및 평가기법 교육	홍종완 서기관
14:50~15:00	10	Coffee Break	
15:00~16:30	90	'11년 부패영향평가 추진방향 및 시책평가 관련 질의응답	안진희 주무관
16:30~16:45	15	Coffee Break	
16:45~17:45	60	심의·의결 위원회 개선과제 및 이행요령 설명	안진희 주무관
17:45~18:00	15	의견수렴 및 맺음말	부패영향분석과장



목 차



❖ 공직유관단체 사규 부패영향평가	7
❖ 사규 부패영향평가 추진방향	25
❖ 공직유관단체 심의·의결위원회 사규 부패영향평가 결과	33

공직유관단체 사규 부패영향평가



공직유관단체 사규 부패영향평가

국민권익위원회
(부패영향분석과)

I 부패영향평가 개요

의 의

- 법령 등에 내재하는 부패유발요인을 체계적으로 분석·평가, 그에 대한 사전정비 및 종합적인 개선을 위한 부패방지시스템

목 적

- 부패 취약분야의 본질적인 부패발생원인을 분석·평가
- 불확정 개념, 공백규정, 비현실적 기준 등을 사전에 제거하여 부패발생가능성 차단
- 정책의 신뢰성·예측가능성 제고

I 부패영향평가 개요

추진근거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8조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평가대상

- 법령, 행정규칙, 자치법규, 공직유관단체 사규

II 공직유관단체 부패영향 평가

1 개 요

의 의

- 사규 등에 내재하는 부패유발요인을 입안단계에서 제거·정비함으로써 정책수립·집행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제도
- ※ '07.12.28. 도입

근 거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제9항

II 공직유관단체 부패영향 평가

평가대상

- 사규 · 정관, 지침, 요령 등 공직유관단체가 제정하여 운용하는 모든 규정
 - 부패가 발생할 개연성이 높은 규정은 중점 평가
 - 기관의 설치, 조직운영 등 국민생활 및 기업활동과 관련이 없어 부패발생요인이 없는 규정은 제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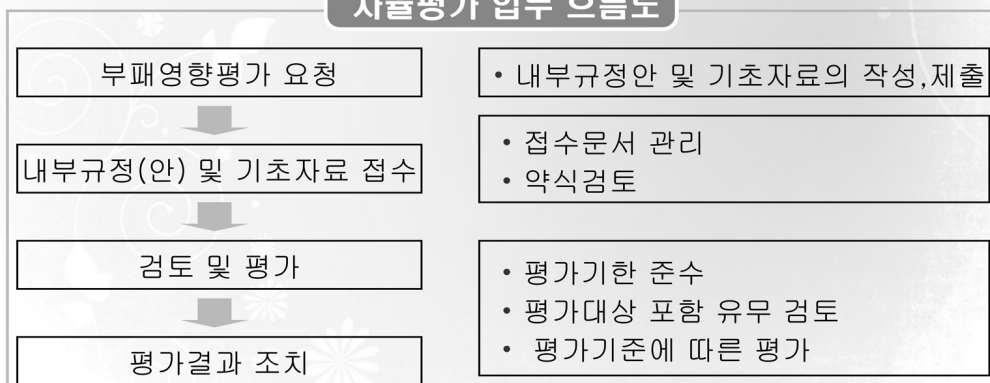
II 공직유관단체 부패영향 평가

평가방법

(1) 자율평가

- 공직유관단체는 기관별 특성에 따라 자율평가 체계 구축 · 운영
 - 평가 전담부서 및 전담직원 지정

자율평가 업무 흐름도



II 공직유관단체 부패영향 평가

평가방법

(2) 요청에 의한 평가

- 공직유관단체의 장은 사규 제·개정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회에 부패영향평가 요청(영 제30조 제9항)
 - 자체적으로 개선·정비가 곤란한 사안 등을 위원회에 평가요청
- 위원회는 평가 요청을 받은 때에는 평가실시, 그 결과를 해당 공직유관단체장에게 서면으로 통보(영 제30조 제9항)

II 공직유관단체 부패영향 평가

평가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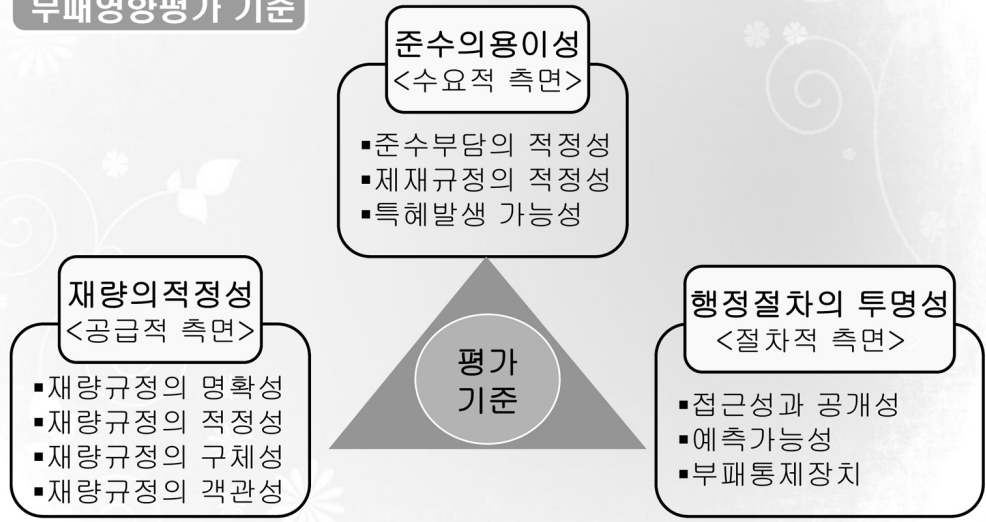
(3) 사규평가 컨설팅

- 공직유관단체 스스로 종합적인 부패영향평가를 원할 경우 위원회는 컨설팅 대상기관으로 선정하여 컨설팅 실시
- 컨설팅 대상기관으로 자율평가 체계를 구축하고 규정 전반에 대한 평가 실시
- 위원회는 컨설팅 대상기관의 담당자 교육, 부패영향평가 사례 및 매뉴얼 제공 등을 통해 자율평가 지원

II 공직유관단체 부패영향 평가

2. 평가기준별 주요 검토 요령

부패영향평가 기준



II 공직유관단체 부패영향 평가

가. 준수의 용이성(수요자의 입장)

(1) 준수부담의 적정성

- 사규 등의 적용대상 집단이 사규상의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부담하는 각종 비용 또는 희생 등이 사회통념에 비추어 적절한 수준인가를 판단

II 공직유관단체 부패영향 평가

- 준수부담이 과도하면 사규 등의 적용대상자 입장에서는 뇌물제공 등 어떠한 대가를 지불해서라도 그 부담을 면하거나 완화시키고자 시도할 가능성 있음.
- 준수부담이 되는 비용이나 희생에는 현금지출, 현물 및 서비스 제공과 같은 경제적 비용뿐 만 아니라 여러 가지 형태의 작위·부작위 의무, 사실상의 희생, 기회비용 등까지 포함

II 공직유관단체 부패영향 평가

평가사례1- 준수부담의 적정성

● 지역협동조합 정관례

현 행	개선안
제77조(선거운동)⑥누구든지 선거와 관련하여 선거공보의 배부와 다음 각호의 방법이 정하는 행위외의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1.○○○○ 2.○○○○ (비고) 다음의 제1호 내지 제4호중 2가지를 선택한다. 1. 선전벽보의 부착 2. 소형인쇄물의 배부 3. 합동연설회 또는 공개토론회의 개최 4. 전화·컴퓨터통신을 이용한 지지호소	제77조(선거운동)⑥누구든지 선거와 관련하여 선거공보의 배부와 다음 각호의 방법이 정하는 행위외의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1.○○○○ 2.○○○○ (삭제)

II 공직유관단체 부패영향 평가

[2] 제재규정의 적정성

- 규정 위반 행위에 대한 제재내용 및 제재정도가 유사사례에 대한 다른 규정의 제재내용 및 제재정도와 비교하여 적절한 수준인지 검토
- 제재수준이 과도하게 높으면 대가를 지불하고서라도 처벌을 회피하고자 하며, 지나치게 미약한 경우에는 다소 희생을 감수하고라도 위반행위를 범하고자 하는 유인 존재
 - 특히 부패행위에 대한 제재인 경우에는 부패재발 방지에 충분한 수준인지를 검토

II 공직유관단체 부패영향 평가

평가사례2- 제재규정의 적정성

●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조례

현 행	개선안
제23조(보조금을 교부받은 자에 대한 제재)도지사는 보조금을 교부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될 때에는 보조금의 교부를 중지하거나 이미 보조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제23조(보조금을 교부받은 자에 대한 제재)도지사는 보조금을 교부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될 때에는 보조금의 교부를 중지하거나 이미 보조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하고 향후 ○년간 교부대상에서 제외한다.
1. 법령 또는 보조조건에 위반한 때	1. 법령 또는 보조조건에 위반한 때
2.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때	2.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때
3. 이 조례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하거나 검사거부 또는 허위보고를 한 때	3. 이 조례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하거나 검사거부 또는 허위보고를 한 때

II 공직유관단체 부패영향 평가

(3) 특혜발생 가능성

- 사규 등의 적용으로 특정한 계층이나 기업, 단체 또는 개인에게 특혜 또는 수익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지 검토
- 사규 등으로 인해 특혜가 발생하는 경우 이를 획득하거나 유지·확대하는 과정에서 뇌물제공, 불법로비 등 부패행위에 직접 개입하거나 이를 용인할 위험소지가 있는지 판단

II 공직유관단체 부패영향 평가

평가사례3- 특혜발생 가능성

• 가로수 조성 및 관리조례

현 행	개선안
제18조(가로수 식재와 관리의 민간위탁)①시장은 가로수의 식재 및 관리의 일부를 산림법인, 산림조합, 산림조합중앙회에 위탁할 수 있다.	제18조(가로수 식재와 관리의 민간위탁)①시장은 가로수의 식재 및 관리의 일부를 산림법인, 산림조합, 산림조합중앙회, 조경공사업 및 조경식재공사업 면허업체에 위탁 또는 대행하게 할 수 있다.

II 공직유관단체 부패영향 평가



나. 재량의 적정성(공급자의 입장)

(1) 재량규정의 명확성

- 사규에 명시하고 있는 재량권자가 누구인지, 재량적 결정이 무엇에 관한 것인지, 결정의 범위는 무엇인지, 그 범위의 한계는 어디까지인지, 결정의 근거는 무엇인지 등이 얼마나 분명하고 확실하게 규정되어 있는지를 판단

II. 공직유관단체 부패영향 평가

평가사례4- 재량규정의 명확성

●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조례

현 행	개선안
제6조(봉안시설의 설치장소) 봉안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장소는 도로·하천·철도로 부터 500미터 이상 떨어진 곳으로 한다.	제6조(봉안시설의 설치장소) 봉안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장소는 도로법상의 도로·하천법상의 하천구역·철도기본법상의 철도의 선로로부터 500미터 이상 떨어진 곳으로 한다.

II. 공직유관단체 부패영향 평가

[2] 재량범위의 적정성

- 재량의 범위가 사회적 통념이나 관례에 비추어 특별히 벗어나 있지 않고 합리적인 수준으로 규정되어 있는지 또는 재량범위가 과도하고 자의적 남용가능성은 없는지를 판단

II 공직유관단체 부패영향 평가

평가사례5- 재량범위의 적정성

● 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

현 행	개선안
제38조(검정합격 취소 등)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검정도서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검정의 합격을 취소하거나 1년의 범위 안에서 그 발행을 정지시킬 수 다. 1. 저작자 또는 발행자가 이 영 또는 이 영에 의한 명령에 위반하였을 때 2. 내용, 체제, 지질 등이 검정한 것과 다를 때 3. 검정도서로 존속시키기 곤란한 중대한 사유가 발생한 때	제38조(검정합격 취소 등)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검정도서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검정의 합격을 취소하거나 1년의 범위 안에서 그 발행을 정지시킬 수 있으며, 제1호의 경우에는 취소하거나 정지하여야 한다. 1. 저작자 또는 발행자가 이 영 또는 이 영에 의한 명령에 위반하였을 때 2. 내용, 체제, 지질 등이 검정한 것과 다를 때 3. 검정도서로 존속시키기 곤란한 중대한 사유가 발생한 때

II 공직유관단체 부패영향 평가

[3] 재량범위의 구체성 · 객관성

● 재량기준의 구체성

- 재량과 관련한 업무처리기준이 세부적으로 규정되어 추가적인 설명이나 보충이 없더라도 누구나 당해 기준만으로도 충분히 업무처리를 할 수 있는가를 판단

● 재량기준의 객관성

- 재량과 관련한 업무처리기준이 사규 등에 명백하고 정확하게 규정되어 있어 누구나 그 내용을 동일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는지를 판단

II. 공직유관단체 부패영향 평가

평가사례6- 재량기준의 구체성 · 객관성

●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조례

현 행	개선안
제16조 (입장료 징수) ① 각 예술단체의 공연시에는 입장료를 징수한다. 다만,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6조 (입장료 징수) ① 각 예술단체의 공연시에는 입장료를 징수한다. 다만,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그 대상, 방법 및 범위는 별표로 정한다.
	별표 -청소년 및 아동 대상 행사 : 어린이 -문화저변 확대 행사: 사회복지시설, 교도소 등 -지역축제 : 기초생활수급자, 노인, 장애인 등

II 공직유관단체 부패영향 평가



다. 행정절차의 투명성

(1) 접근성과 공개성

● 접근성

- 이해관계자들이 업무처리과정에서 자신의 이해를 피력할 수 있는 참여제도 또는 의견진술 기회가 사규에 보장되어 있는가를 판단

II 공직유관단체 부패영향 평가



다. 행정절차의 투명성

(1) 접근성과 공개성

공개성

- 평가대상 업무의 내용 및 처리절차와 관련된 양질의 정보가 이해관계자, 일반국민 등에게 충분히 공개되고 있는지를 판단
- 민원인 등의 정보공개 신청에 따른 소극적인 정보제공 뿐 만 아니라 관련 정보를 인터넷게시, 개별통지 등을 통해 수시로 알려주는 적극적 공개 모두 포함

II 공직유관단체 부패영향 평가

평가사례7- 재량규정의 명확성

● 사회단체보조금 관리조례

현 행	개선안
(신설)	제19조(보조사업의 실적 등 공개) 도지사는 보조사업 완료시 정산결과 및 평가결과를 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II 공직유관단체 부패영향 평가

[2] 예측가능성

- 민원인의 입장에서 당해 업무와 관련하여 준비할 구비서류나 조치하여야 할 사항이 무엇인지와 행정 처리과정, 처리기간 및 결과 등을 쉽게 확인하고 예측할 수 있는지 여부
- 업무처리의 과정 및 결과를 누구나 충분히 예측가능하고, 필요한 경우 이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지를 판단

II 공직유관단체 부패영향 평가

평가사례8 - 예측가능성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시행령

현 행	개선안
(신설)	제21조의2 (보조 또는 용자 규모 및 대상사업) ①법 제50조제1항제2호에서 수익성이 없는 노선의 운행에 대한 지원은 노선별운송원가에서 운송수입금을 차감한 금액의 일정비율로 한다.

II 공직유관단체 부패영향 평가

[3]부패통제장치

- 준수부담을 회피하거나 특혜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패를 통제하거나 업무처리과정에서의 대면접촉 기회를 이용한 부패가능성 등을 통제하는 특별한 제도가 마련되어 있는지 여부
- 과도한 준수부담, 특혜의 발생, 업무처리과정에서 담당자와 이해관계인들 간의 대면접촉 및 일상적 교류 등 부패유발요인이 존재하는 경우 그에 대한 통제장치가 구비되어 있는지를 판단

II 공직유관단체 부패영향 평가

평가사례9- 부패통제장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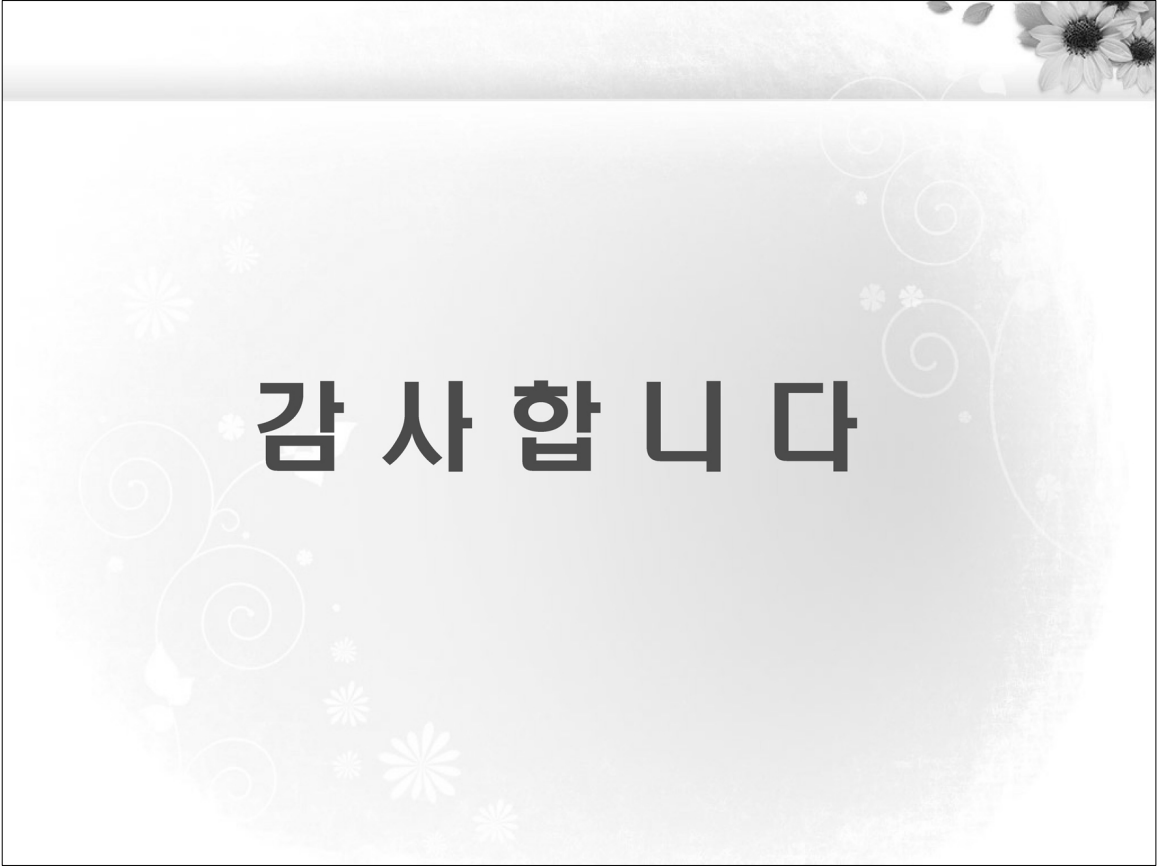
● 공유재산관리 심의회 운영 조례

현 행	개선안
제12조(심의회의 업무)심의회의 심의사항은 다음과 같다 1.공유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사항 2.재산의 용도변경 및 용도폐지에 관한 사항	제12조(심의회의 업무)심의회의 심의사항은 다음과 같다 1.공유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사항 2.재산의 용도변경 및 용도폐지에 관한 사항 3.공유재산의 무상사용 및 대부

II 공직유관단체 부패영향 평가

라. 검토 시 유의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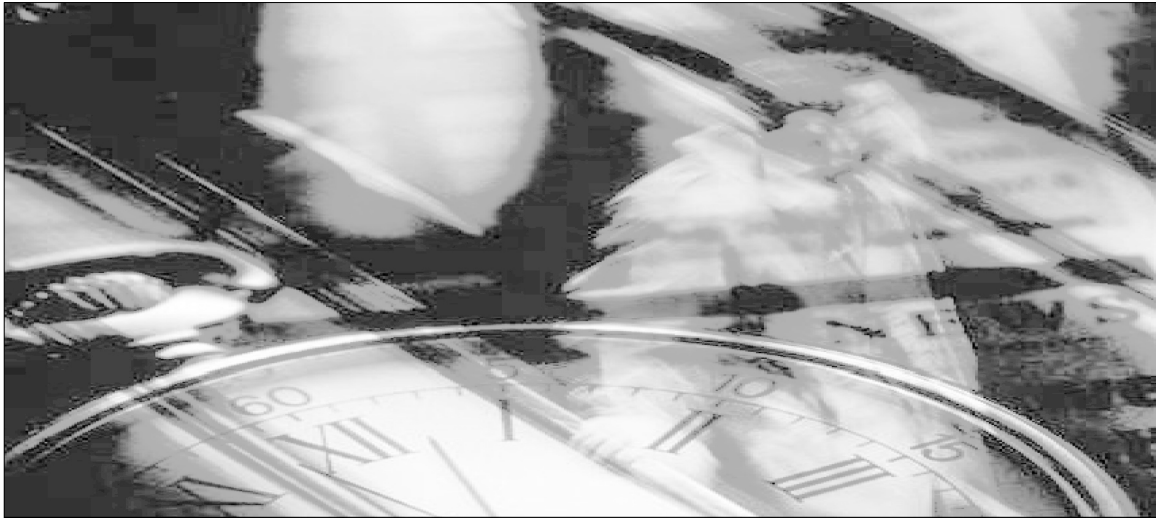
- 문리적 검토뿐만 아니라 당해 사규의 적용에 따른 부정적효과 및 운영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패위험성 등을 분석·예측
- 업무별로 자체 감사결과, 외부기관 감사 지적사항, 언론보도내용 등 부패 실태자료를 관리하여 사규 분석과 개선안 마련시 활용
- 업무 분야별로 관련기관, 시민단체, 전문가, 이해관계자 등에 대한 종합적인 정보망을 구축하여 필요시 의견수렴 및 자문 등에 적극 활용(자문기구 구성·운영)



감 사 합 니 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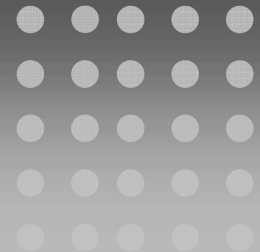
사규 부패영향평가 추진방향





사규 부패영향평가 추진방향

국민권익위원회
(부패영향분석과)



목 차

I. 사규 홈페이지 공개 확대

II. 자율적 부패영향평가 개선 품질 제고

III. 청렴도, 인식도 관련 개선과제 이행관리 강화

IV. 자율적 개선 노력에 대한 실적 평가 강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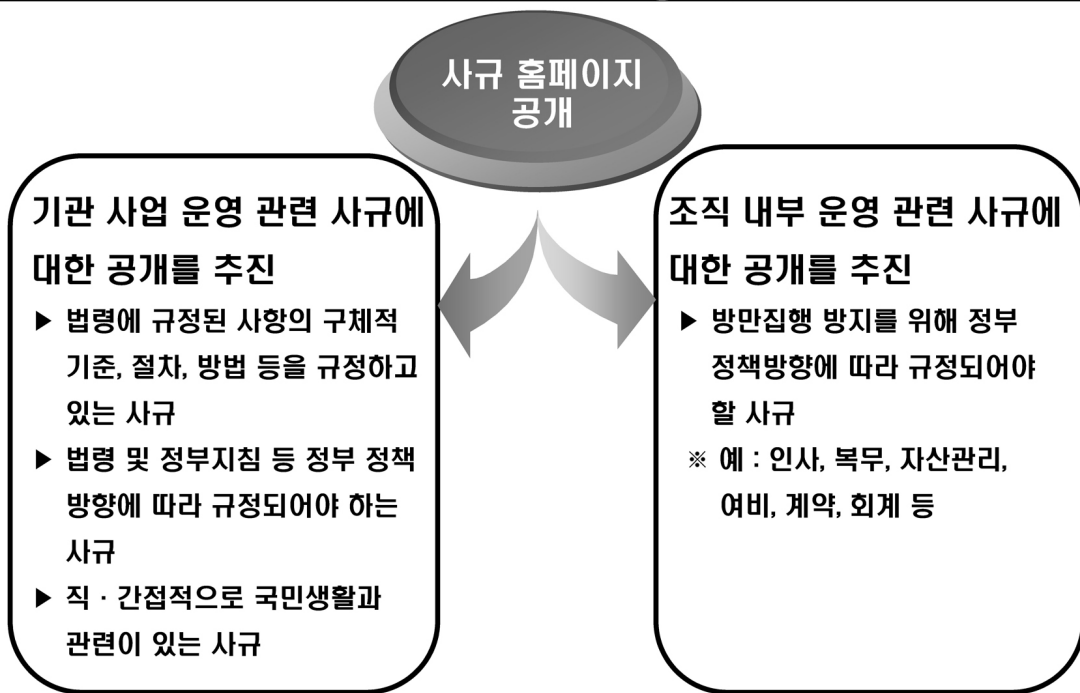
V. 맺음말

1. 사규 홈페이지 공개 확대

- ❖ 공직유관단체가 국민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 증가
- ❖ 사규는 공직유관단체 업무 수행의 기준/절차 등으로 국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나 비공개 - 지원, 평가, 검사 및 건설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
- ❖ 업무처리 기준/절차의 공개는 행정의 투명성을 제고
- ❖ 투명성 확대는 책임행정 및 공정한 업무 수행을 위한 필수과제

company name

1. 사규 홈페이지 공개 확대



company name

1. 사규 홈페이지 공개 확대

❖ 기관 자율적으로 의미있는 규정 공개 유도

- 공개율 외에 공개 내용의 중요성, 공개 근거 규정 마련 등 기관의 자율적 노력에 인센티브 부여

현 재 시책평가 기준

홈페이지 사규 공개 정도

- 100% : 20점 · 90~99% : 15점
- 80~89% : 10점 · 70~79% : 5점
- 70% 미만 : 0점

개선 시책평가 기준

홈페이지 사규 공개 노력

- ① 부서장 이상 결재한 관련 규정을 가이드라인에 따라 100% 공개한 기관 : 20점
또는
- ② 공개 근거 규정 마련 5점 + 의미있는 규정 공개 노력 15점

company name

2. 자율적 부패영향평가 개선 품질 제고

체계 구축

- 부패영향평가 제도를 명문화
- 부패영향평가 전담 직원 부서 및 직원 지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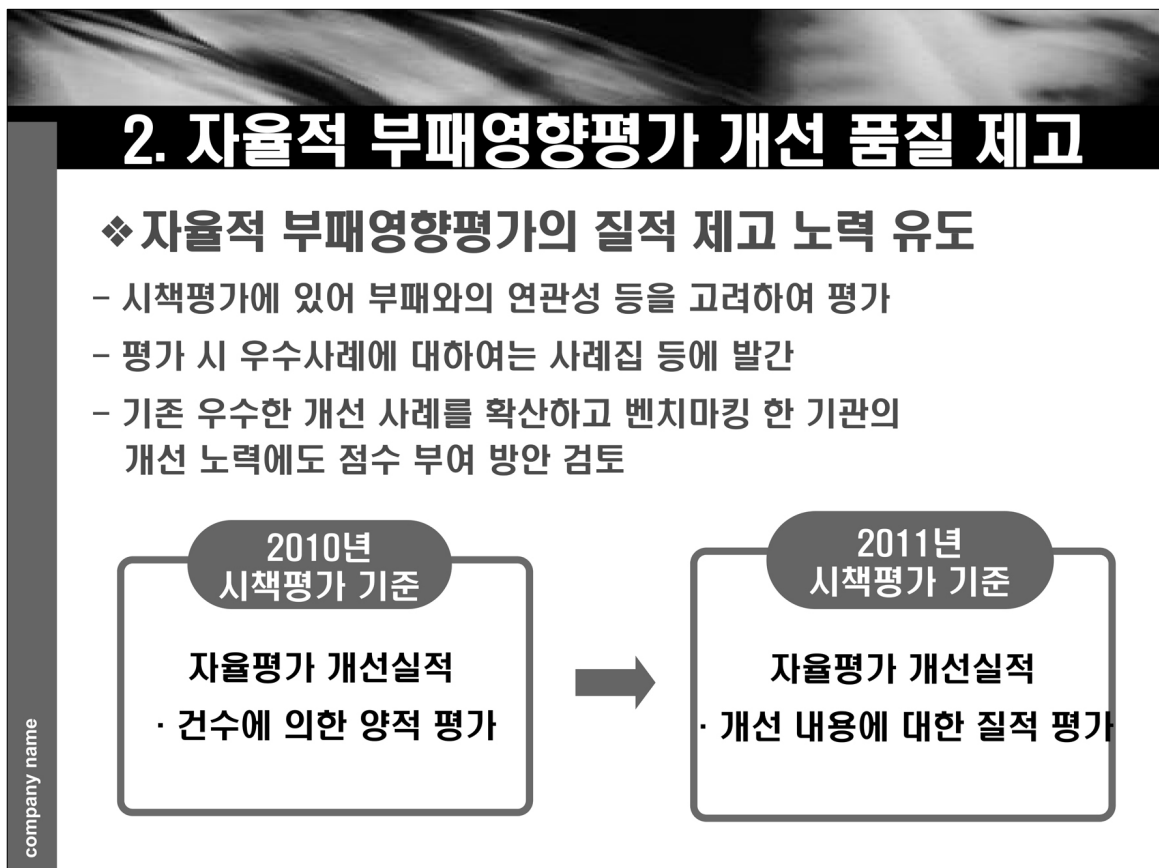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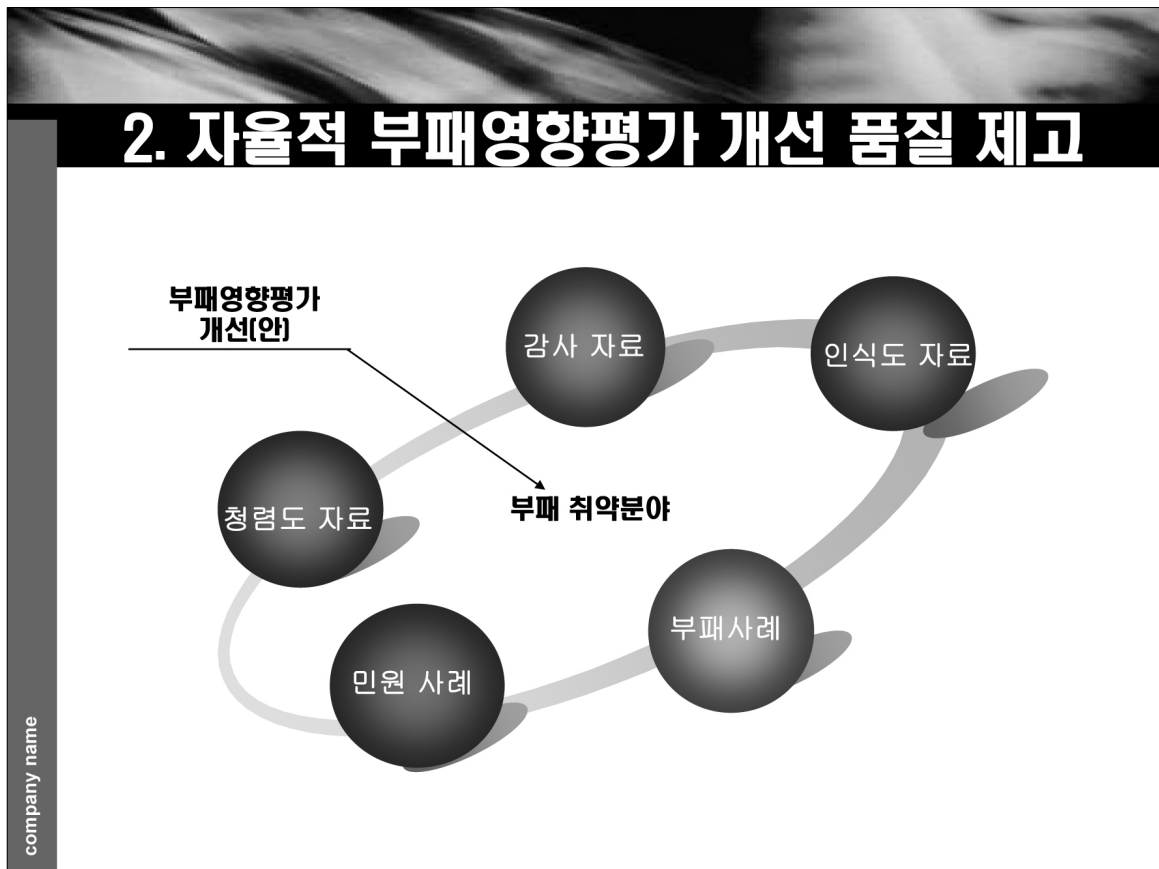
부패영향 평가 실시

- 제 · 개정 시 부패영향평가 실시
- 위원회 개선 권고 과제 개선 실시

개선 [안] 품질 제고

- 건수 위주의 평가 방식 탈피
- 부패가 빈발하는 구조적 취약분야 평가 집중
- 우수사례 확산 강화

company name



3. 청렴도, 인식도 개선과제 이행 관리 강화

청렴도

내부 청렴도 관련 인사, 업무추진비 등
기관운영비, 감사 등에 관한 공통과제
25건 이행실적 관리

청렴도

외부 청렴도 관련 업무처리 절차의
공정성을 위해 운영하고 있는
심의·의결 위원회 개선과제 15건
이행실적 관리

인식도

부정부패에 대한 관대한 처벌 방지를
위해 공금횡령 공직자 형사고발 기준
6건 이행실적 관리

company name

4. 자율적 노력에 대한 질적 평가 강화

체계 구축
[25점]

개선실적
[35점]

이행실적
[30점]

자체 노력도
[10점]

① 전담직원 및
제도 규정화

② 홈페이지 사규
공개노력 및
공개율

① 개선과제 발굴
실적

② 개선과제를
실제 규정에
반영한 실적

① 개선 권고 과제
이행실적

① 직원 집합교육
및 회의실적

② 사규 운용부서
협의 실적

company name

5. 맺음말

- ❖ 사규 홈페이지 공개 관련 공개 대상을 검토하고
관련 자료를 발송된 양식에 맞추어 제출 (5.13.금)
- ❖ 사규 홈페이지 공개 관련 의미있는 규정 공개로
투명성 및 청렴도 관점에서 우수한 개선 사례의 경우
가점 부여 방안 검토
- ❖ 사규 홈페이지 공개 관련 지원사항을 요청
- ❖ 인사, 기관운영비 개선과제 등 부패영향평가
관련 자료는 위원회 홈페이지 참고

(위원회 자료- 부패방지 정책- 부패영향평가)

company name

Thank You !

공직유관단체 심의·의결위원회 사규 부패영향평가 결과



공직유관단체 심의·의결위원회 사규 부패영향평가 결과

국민권익위원회
(부패영향분석과)

목 차

- 1 추진배경
- 2 위원회 규정 부패영향평가 결과
- 3 개선과제 이행요령

I. 추진 배경

1. 위원회 운영 현황

❖ 위원회 개념

- 위원회, 심의회, 협의회 등 명칭 불문
- 복수의 구성으로 이루어진 합의제 기관
- 목적 : 자문, 조정, 협의, 심의 또는 의결 등

※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I. 위원회 운영 현황

❖ 위원회 분류(102개 기관, 1,688개 위원회)

구 분	위원회 성격	개수
의결위원회	법적 구속력 있는 의사결정 기능을 수행	<u>156</u>
심의·조정 위원회	기관의 권한행사를 위해 심의를 거치도록 정한 사항을 심의	<u>530</u>
내부방침 결정위원회	각급기관 내부방침결정 등을 위해 공통으 로 설치된 위원회	772
순수자문 위원회	구속력 없이 정책결정과정에서 순수한 조 언적 성격	230

I. 위원회 운영 현황

❖ 의결위원회

진료심사평가위원회, 금융분쟁조정위원회, 급여재심위원회,
예술영화인정소위원회, 보훈복지사업비운영위원회,
국민연금심사위원회, 기금운용심의회, 자산운용위원회,
신기술심사위원회,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고용서비스우수기관인증위원회, 설계자문위원회,
기금융자심의회, 보증심사위원회, 영상물등급위원회,
분야별(영화, 비디오, 공연추천)소위원회 및
사후관리위원회, 예금보험위원회, 자산운영위원회,
이의신청협의회, 금융자산운용위원회, 자금운용성과평가위원회

1. 위원회 운영 현황

❖ 심의 · 조정위원회

계약심의위원회, 기술평가위원회,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이용자피해보상심의위원회, 최저가낙찰제 입찰금액적정성
심사위원회, 사업심사위원회, 대체산업융자금심의위원회,
장기요양심사위원회, 재해대책심의위원회,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 내부방침결정위원회

임원추천위원회, 해외출장심사위원회, 보안심사위원회

❖ 순수자문위원회

홍보위원회, 고객만족위원회, 경영자문위원회 등

2. 추진 배경

❖ 위원회 관련 부패사례 지속

- 청렴성 · 전문성이 낮은 위원이 위촉
→ 개인적인 이익도모/음성적인 청탁
- 의사결정 과정에서 문제발생시 책임 회피
- 의사결정을 정당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

❖ 「행정기관소속 위원회의 설치 · 운영에 관한 법률」

➡ 공직유관단체 사규에 부패통제장치 직접 규정 필요

3. 추진 내용

❖ 위원회 규정 부패영향평가

- 102개 기관의 심의·의결위원회 중 106개 분석
- 법령에 근거를 두고 구성·운영
주요 업무의 의사결정을 수행하는 위원회 위주
- 기관당 1개 이상의 위원회 규정 검토
- 직접적 부패관련성이 낮은 자문위원회 및 내부
방침위원회는 제외

II. 위원회 규정 부패영향평가 결과

▣ 위원회 구성 관련 부패사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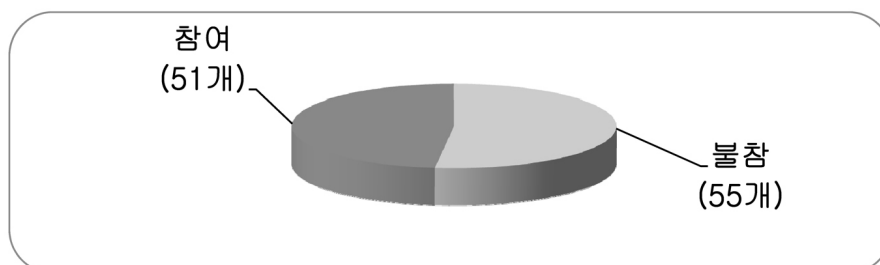
- 경찰청('10년 3월)
 - ○○기관은 용역수행 업체 평가위원회를 내부 직원
으로만 구성 → ○○기관 출신이 근무하고 있는 업체 선정
- 국정감사 ('09년 10월)
 - 심의대상 기관의 사외이사로 활동, 연구비를 지원
받은 인물이 ○○기관 ○○위원회 위원으로 선정
- '09년 국정감사
 - ○○기관의 ○○위원회가 비전문가 참석 등의 이유로
제 역할을 다하지 못했다는 주장 제기

1. 위원회 구성의 공정성 · 신뢰성 제고

❖ 문제점

- 내부직원만으로 위원회 구성 → 객관성 미흡

〈위원회 민간위원 참여 허용 규정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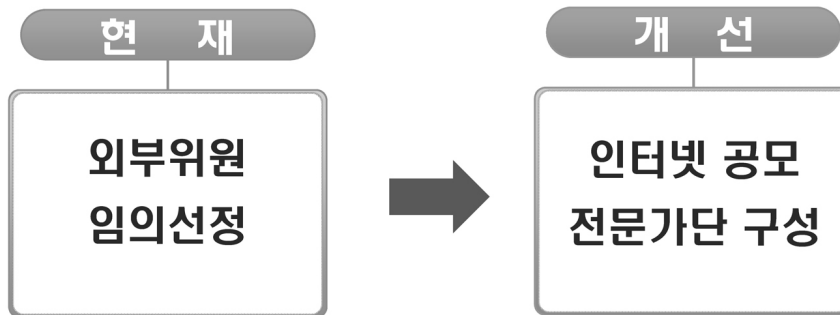


▶ 규정 기관 : 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영상물등급위원회

1. 위원회 구성의 공정성 · 신뢰성 제고

◆ 개선방안-1

- 외부위원 위촉시 인터넷 등을 통한 공모절차
- 관련 분야 전문가단(Pool) 구성 · 위촉



1. 위원회 구성의 공정성 · 신뢰성 제고

【우수사례】 내 「최저가낙찰제 입찰금액적정성
심사위원회 설치 및 운영기준」

제4조(심사위원회의 구성)

- ⑤ 외부 전문심사위원(이하 “외부위원” 이라 한다)은 제5조제1항의 자격을 가진 자를 대상으로 인터넷 등을 통하여 수시 · 개별적으로 별지 제2호 서식의 심사위원(후보자)등록신청서를 접수받아 선정하고, 내부 전문 심사위원(이하 “내부위원” 이라 한다)은 제5조제2항의 자격을 가진 자를 대상으로 선정한다.

1. 위원회 구성의 공정성 · 신뢰성 제고

【참고】 정부위원회 설치 · 운영 지침(행정안전부)

Ⅳ. 위원회 구성 및 운영

1. 위원회 구성

○ 민간위원의 모집 다양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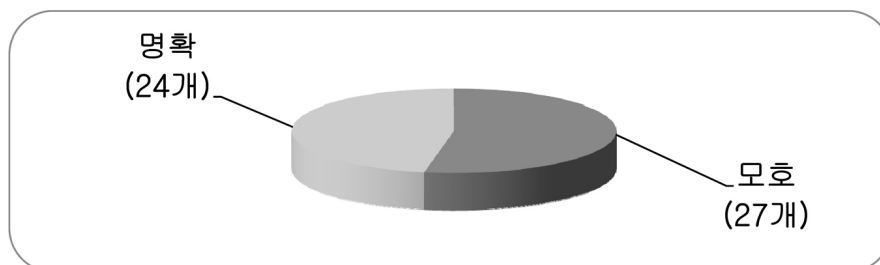
- 민간위원 위촉시 인터넷, 관보게재 등을 통한 공모절차를 거치는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여 투명성 제고
- 다만, 대외보안 및 고도의 전문성 등이 요구되는 경우 비공개로 모집하되, 관련분야 전문가단(Pool)을 구성하여 위촉

1. 위원회 구성의 공정성 · 신뢰성 제고

❖ 문제점

- 위원회에 참여하는 민간위원의 자격기준 모호

〈위원회 민간위원 자격기준 규정 현황〉



▶ 규정 기관 : 한국가스안전공사 등

1. 위원회 구성의 공정성 · 신뢰성 제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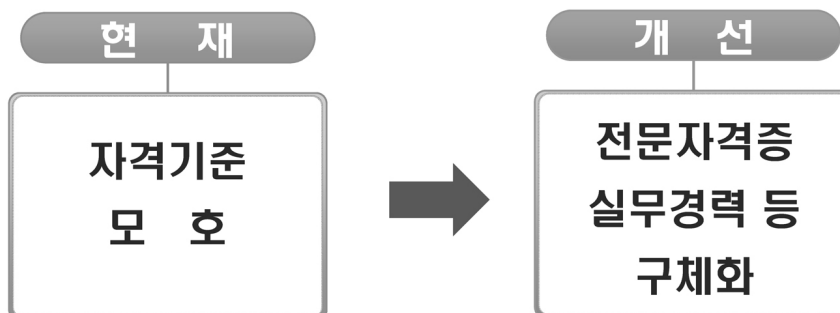
〈위원회 민간위원 자격기준이 불명확한 규정 예시〉

기관명	위원회명	위원의 자격기준 규정
A기관	OO위원회	산업계, 학계, 연구계 등의 해당분야 전문가
B기관	OO심의위원회	OO개발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C기관	OO심의위원회	근로자 대표 및 사업주 대표, OO안전 또는 OO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D기관	OO심의위원회	금융·재정분야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1인

1. 위원회 구성의 공정성 · 신뢰성 제고

◆ 개선방안-2

- 의사결정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 전문자격증, 실무경력 등 자격요건을 구체적으로 명시



1. 위원회 구성의 공정성 · 신뢰성 제고

【우수사례】 한국가스안전공사 「가스안전기술심의 위원회 운영규정」

제4조(위원자격) ①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적합한 자로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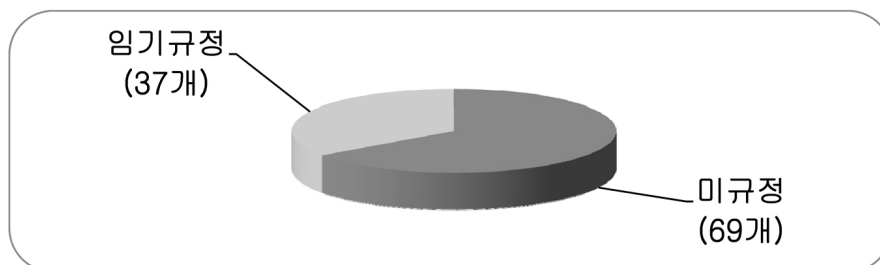
1. 전문대학 이상의 학교에서 기계 · 화공 · 금속 · 안전관리 · 토목 · 건축 또는 전기분야의 부교수 이상의 경력이 2년 이상인 자
2.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술계종 가스 · 기계 · 화공 · 금속 · 안전관리 · 토목 · 건축 및 전기분야의 기술사 자격을 취득하고 당해 분야에서 3년 이상 종사한 자
3. 가스관련업소 또는 단체에서 기술담당이사급 이상의 경력소유자
4. 공인된 연구소에서 책임연구원 이상의 경력이 있는 자
5. 그밖에 위원장이 자격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

1. 위원회 구성의 공정성 · 신뢰성 제고

❖ 문제점

– 임기제한 규정 X → 장기연임 → 유착관계 형성

〈위원의 연임 등 임기 규정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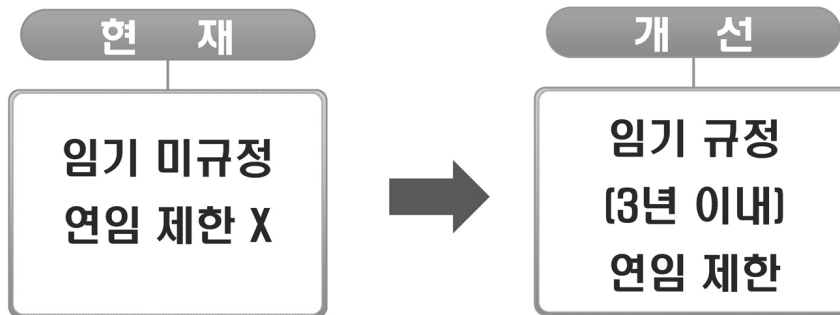


▶ 연임 제한(1개) : 심사평가위원회(한국관광공사)

1. 위원회 구성의 공정성 · 신뢰성 제고

◆ 개선방안-3

- 이해관계자와 유착관계 형성을 방지하기 위해
위원의 임기 및 연임횟수를 제한



1. 위원회 구성의 공정성 · 신뢰성 제고

【우수사례】 한국관광공사 「심사평가 규정」

제7조(평가위원선정)

- ④ 심사 · 평가가 연례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 외부위원은 3년 이상 연속하여 위원으로 참여할 수 없으며, 외부위원 후보자 구성원 또한 매년 20%이상 교체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1. 위원회 구성의 공정성 · 신뢰성 제고

❖ 문제점

- 감독부처 공무원 위촉 → 과도한 영향력 행사

※ 25개 위원회

※ ○○기관의 경우 3개 위원회에 직무 관련 개연성이 있는 감독기관의 공무원이 위원으로 참여('10.3월, 권익위 실태조사)

◆ 개선방안-4

- 감독부처 공무원의 소관위원회 참여 제한
- 법령의 경우 : 권익위에 개정 건의

□ 외부위원 관련 부패사례

▪ 검찰청 ('08년 1월)

- 동남권 유통단지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 금품을 받은 혐의로 대학교수와 공기업 임원 등 평가위원 3명 구속영장 청구

▪ 경찰청('09년 12월)

- 경기도 파주 교하신도시 복합커뮤니티센터 입찰과정에서 건설사로부터 수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파주시청 공무원과 평가위원인 ○○공단 직원 등에게 구속영장 신청

2. 민간위원의 청렴성 확보

❖ 문제점

- 위원회 법령 위반, 부패행위 전력 등에 대한
검증절차^無 → 부패전력·청렴성 부족인사 위촉
- ※ ○○위원회 위원 중에는 식약청에서 징계를 받았던
경력이 있었던 인물 등이 포함('09.10월, 국정감사)
- ※ ○○기관은 추천기관에 의해 추천된 위원을 별다른
검증 절차없이 위촉('10.3월, 권익위 실태조사)

2. 민간위원의 청렴성 확보

〈위원회활동의 부패통제장치 규정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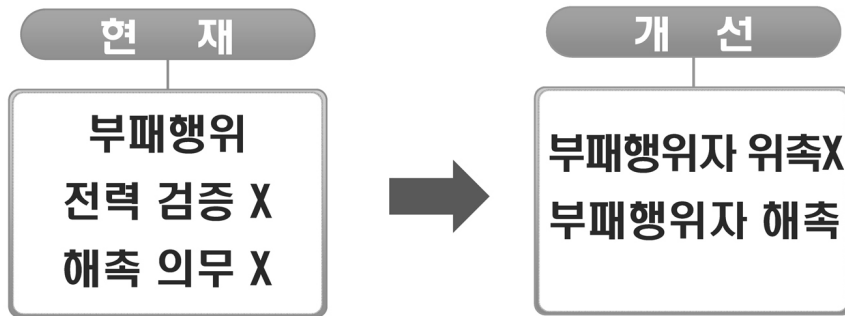
구 분			기관수
부패전력자 미위촉	부패행위자 해 촉	윤리서약서 징 구	합계
규정	규정	규정	1개
규정	-	규정	2개
규정	-	-	2개
-	규정	규정	4개
-	규정	-	9개
-	-	규정	1개
-	-	-	87개

▶ 모두 규정 : 한국철도시설공단(기술심의위원회)

2. 민간위원의 청렴성 확보

◆ 개선방안-1

- 부패행위 관련 위촉 및 해촉기준을 자격요건에 구체적으로 명시



◆ 개선방안-2

- 민간위원 위촉의 윤리서약서 작성 및 제출 의무화
- 민간위원에 대한 윤리규정 마련 시행

2. 민간위원의 청렴성 확보

【우수사례】 한국고용정보원 「고용지원서비스
우수기관 인증제 운영규정」

제9조(평가위원 구성)

② 운영기관의 장은 평가위원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의 범위에서 평가위원의 선정을 배제한다.

1. 평가시 부정·부실 평가를 초래하여 고용지원 서비스 인증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한 경우
2. 평가위원의 활동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상업적, 재정적 또는 기타 압력이나 이해상충 요소가 발생한 경우
3. 평가중 해당기관으로부터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받은 경우

2. 민간위원의 청렴성 확보

【우수사례】 한국철도시설공단
「기술심의위원회 운영지침」

제6조(위원의 자격) ③ 위 자격에 만족하더라도 다음 사항 중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위원으로 선정할 수 없다.

1. ~ 3. (생략)

4. 설계 및 기술제안서 심의 등과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거나 부정한 청탁에 따라 권한을 행사하는 등의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또는 특정 업체에 유·불리하게 설계 점수를 채점하여 문제를 야기시킨 경우

5. ~ 7. (생략)

8. 위촉 시 경력, 학력 또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 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부패행위 전력을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2. 민간위원의 청렴성 확보

【우수사례】 한국철도시설공단
「기술심의위원회 운영지침」

제9조(직무와 의무)

③ 위원은 심의 시 인지한 내용을 외부에 누설하거나 특정인의 이익에 활용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심의개시 전에 청렴서약서(별지 제2호 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3. 위원 활동의 이해충돌방지 장치 마련

◆ 개선방안-1

- 위원회의 제척·기피·회피 장치 마련

▪제척 :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사항에 관한 심의·의결에
관여할 수 없음

- 자기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 자기와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자와 관련된 사항
- 자기와 법률상 특수관계(예 : 법인세법시행령 제87조 등) 등으로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 자기가 증언·감정·법률자문 또는 손해사정을 한 사항
- 위원이 되기 전에 감사·수사 또는 조사에 관여한 사항

3. 위원 활동의 이해충돌방지 장치 마련

▪기피 : 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하는 사항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심의·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기피신청을 할 수 있음

▪회피 : 위원은 제척사유 또는 기피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기 스스로 그 사항의 심의·의결을 회피할 수
있음

3. 위원 활동의 이해충돌방지 장치 마련

【참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8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재심사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건의 심리·재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자가 그 사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사건에 관하여 공동권리자 또는 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
2. 위원이 그 사건의 당사자와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그 사건에 관하여 증언이나 감정을 한 경우

3. 위원 활동의 이해충돌방지 장치 마련

【참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4. 위원이 그 사건에 관하여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5. 위원이 그 사건의 대상이 된 보험급여 결정등에 관여한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심리·재결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위원은 제1항이나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면 스스로 그 사건의 심리·재결을 회피할 수 있다.

④ 사건의 심리·재결에 관한 사무에 관여하는 위원 아닌 직원에게도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3. 위원 활동의 이해충돌방지 장치 마련

❖ 문제점

- 위원이 이해관계자의 연구용역을 직접 수행하는 등 유착사례 발생

〈위원의 직무관련 용역·공사 등 참여금지 규정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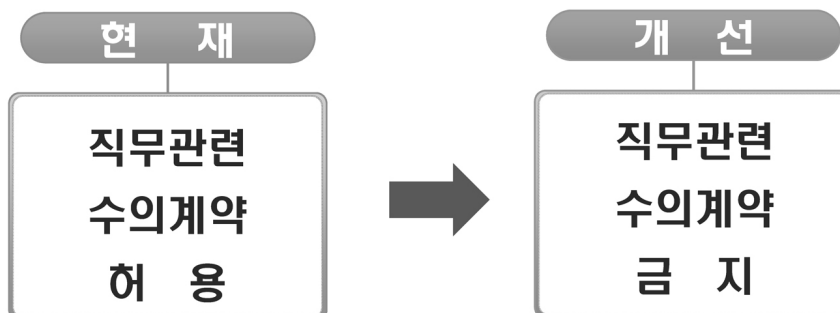
구 분	직무관련 용역·공사 참여금지 규 정	직무관련 용역·공사 참여금지 미규정
기관수	4개(4%)	102개(96%)

- ▶ 참여금지 규정 : 한국철도시설공단, 내, 한국관광공사,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

3. 위원 활동의 이해충돌방지 장치 마련

◆ 개선방안-2

- 위원회 위원은 당해 기관 또는 심의대상 기관에서 발주하는 직무 관련 용역·공사 등에 수의계약에 의한 방식으로 참여 금지



3. 위원 활동의 이해충돌방지 장치 마련

【우수사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제15조(비밀의 유지 및 위원의 제척, 기피)

- ④ 위원은 위원회에서 평가의 공정성, 객관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재임기간 동안 의약품 제조·수입업자로부터 의약품 보험등재를 위한 연구용역 등에 참여하지 않아야 한다.

■ 위원회 회의 비공개 관련 부패사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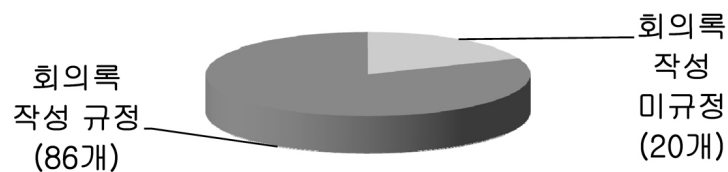
- 언론보도('06년 8월)
 - ○○기관 ○○소위의 결정서에는 폭력성과 같은 세부 항목에 ‘○’ 표만 되어 있고 심의 과정에서 나온 위원들의 의견이나 평가는 누락
- 권익위 실태조사('10년 3월)
 - ○○시 미술장식심의위는 심의결과 요약과 위원별 가·부 현황만 기술하고, ○○구청·○○시 광고물 심의위는 회의록 미작성
- 언론보도('10년 2월)
 - 최○○ 의원은 ○○ 관련 사업자 선정시 ○○기관이 회의록을 조작했다는 의혹 제기

4. 위원회 운영의 공개성 · 투명성 강화

❖ 문제점

- 회의록 작성X / 회의결과만 요약 · 정리
→ 회의내용 사후 확인 불가

〈위원회 회의록 작성 규정 현황〉



4. 위원회 운영의 공개성 · 투명성 강화

◆ 개선방안-1

- 회의록 작성 및 보관 의무화
 - : 위원의 발언요지, 결정사항 및 표결내용 등 회의 내용 전반을 구체적으로 작성
 - : 발언 요지는 속기록 또는 녹음기록 형태로 첨부하여 보관

※ 회의록 수록 내용

- 회의명, 회의개최기관, 일시 및 장소, 참석자 및 배석자 명단, 회의진행순서, 상정안건, 발언요지, 결정사항 및 표결내용에 관한 사항

4. 위원회 운영의 공개성 · 투명성 강화

【참고】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회의록의 작성 · 관리)

- ② 제1항에 따른 회의록에는 회의의 명칭, 개최기관, 일시 및 장소, 참석자 및 배석자 명단, 진행 순서, 상정 안건, 발언 요지, 결정 사항 및 표결 내용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며, 전자기록생산시스템을 통하여 회의록을 생산 또는 등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제1호 내지 제3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회의 중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회의는 회의록과 함께 속기록 또는 녹음기록 중 어느 하나를 생산하여야 하며, 녹음기록의 경우에는 녹취록을 함께 생산하여야 한다.

4. 위원회 운영의 공개성 · 투명성 강화

【참고】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 · 운영에 관한 법률

제13조(위원회의 현황 및 활동내역 통보 등)

- ③ 행정기관의 장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제2항에서 정한 바에 따라 위원회의 회의록 · 속기록 또는 녹음기록을 구체적으로 충실히 작성하여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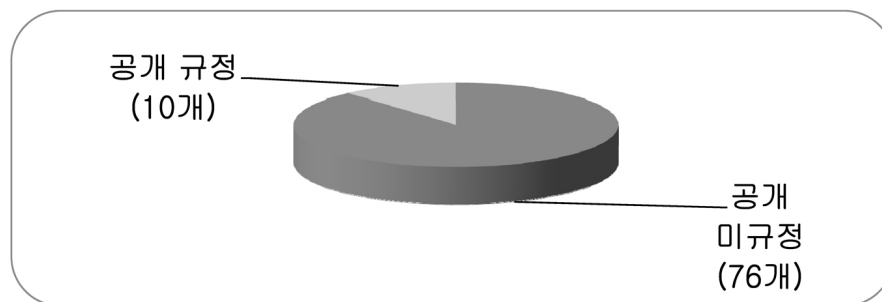
4. 위원회 운영의 공개성 · 투명성 강화

❖ 문제점

- 회의록 공개X

→ 국민 또는 이해관계인으로부터 의혹 제기 소지

〈위원회 회의록 공개 규정 현황〉



4. 위원회 운영의 공개성 · 투명성 강화

◆ 개선방안-2

- 일반인에게 회의록을 원칙적으로 공개하고, 위원회 의결이 있을 경우에만 비공개

4. 위원회 운영의 공개성 · 투명성 강화

【우수사례】 예금보험공사 「예금보험위원회 규정」

제12조(의사록)

- ③ 위원장은 의사록이 확정되는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공사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 ④ 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위원회가 금융시장의 안정이나 신용질서의 유지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의사록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공개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공시하여야 하며, 항목별로 공개 기간을 설정하고 그 비공개 기간이 종료되는 시점에 공시여부를 재검토하여 그 사유가 해소되었을 경우에는 즉시 이를 공시하여야 한다.

4. 위원회 운영의 공개성 · 투명성 강화

❖ 문제점

- 회의록에 대한 위원의 확인 의무X
- 공문서 조작 가능성 상존

〈회의록에 위원의 서명 규정 현황〉

구 분	회의록 서명 규정		회의록 서명 미규정
	위원 전원 서명	위원장만 서명	
기관수	17개	14개	75개

4. 위원회 운영의 공개성 · 투명성 강화

◆ 개선방안-3

-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전원이 의무적으로 회의록 열람 · 서명

【우수사례】 국민체육진흥공단 「기금운용심의회 운용규정」

제13조(의사록) ① 간사는 심의회의 회의 전말을 기록한 의사록을 작성하여 참석위원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 비치하여야 한다.

② 간사는 의사록의 사본을 심의회 구성원 전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 위원회 심의 편법 운영사례

▪ 청렴위 실태조사('06년 3~4월)

- ○○기관은 ○○심의위원회 : 당연직 위원이 아닌 ○○기관 상무 대리인(6회), ○○협회회장 대리인(4회) 등 민간위촉위원의 대리인이 위원회 참석 · 의결
- ○○기관 ○○심의위원회는 총21회 위원회 개최 중 17회를 서면결의하고 1,755만원의 수당을 지급, ○○심의위원회의 경우 7회 모두 서면심의

5. 위원회 심의의 충실성 제고

❖ 문제점

- 위원자격이 없는 민간인사가 대리참석
 - ※ 2개 위원회 대리인 참석 허용/'위원'이라고만 명시 → 당연직 위원이 아닌 민간위원도 참석가능
- 근거규정 없이 서면심사로 대체
 - ※ 13개 위원회 서면회의가 가능하도록 규정
→ 2회 연속 서면회의 금지 규정 X

5. 위원회 심의의 충실성 제고

◆ 개선방안-1

- 대리참석이 불가피할 때에는 법령 등에 의한 직무위임자로 하고 그 이외의 경우는 대리참석 금지

【우수사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제14조(위원회의 회의)

- ⑧ 각 위원회 위원의 회의참석에 대하여는 **대리참석을 허용하지 아니 한다.**

5. 위원회 심의의 충실성 제고

◆ 개선방안-2

- 모든 위원회는 대면심의·의결을 원칙
- 서면심의·의결: 사유적시·사전의결한 경우만
- 2회 연속 서면회의 지양

【참고】 정부위원회 설치·운영지침 [행정안전부]

IV. 위원회 구성 및 운영

2. 위원회 운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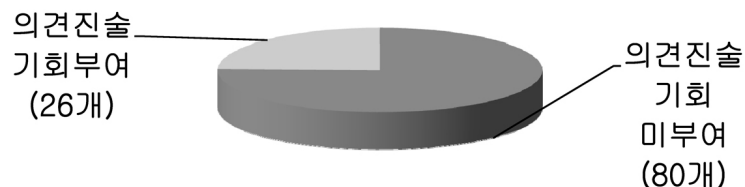
- 출석회의의 원칙, 서면회의의 지양
- 부득이 서면회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심의대상을 최소한으로 한정하고, 2회 연속 서면회의의 지양

6. 이해관계인의 권익보호 강화

❖ 문제점

- 이해당사자의 회의출석·의견진술 절차 미비
→ 신청인 등 이해관계인의 권익보호 소홀

〈이해관계자 등에 의견진술 기회부여 규정 현황〉



6. 이해관계인의 권익보호 강화

◆ 개선방안-1

- 이해관계인의 의견진술 기회부여 및 안내의무화

【우수사례】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 세칙」

제24조(당사자 등의 의견청취)

- ③ 당사자 기타 이해관계인은 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우수사례】 한국전파진흥원

「방송콘텐츠제작지원사업 심의조정위원회 운영지침」

제9조(의견청취) 위원회는 심의에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 이해관계인, 또는 관계 직원을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6. 이해관계인의 권익보호 강화

❖ 문제점

- 개최일시 등 위원회 일정공개 및 심의·의결 후 결과통지 기한 규정이 없어 신청인이 예측 곤란

※ 위원회 일정 홈페이지 공개 기관(2개)

- 근로복지공단의 '업무상 질병판정 위원회',
한국공항공사의 '최저가낙찰제의 입찰금액 적정성
심사위원회'

6. 이해관계인의 권익보호 강화

〈심의·의결 결과의 통지기한 규정 현황〉

구 분	통지기한 구체화	기관수	기관명
규 정	기한 명확	7개	국민연금심사위원회(국민연금공단) 약제급여평가위원회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
	기한 모호	3개	-
미규정	-	96개	-

6. 이해관계인의 권익보호 강화

◆ 개선방안 - 2

- 개최일시 등 위원회 운영 현황 "홈페이지 공개"
- 심의기간 및 안건의 의결결과 "통지기한 규정"

【우수사례】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운영규정」

제12조(회의소집 통보)

- ② 위원장은 제1항에 따라 심의회의를 소집한 때에는 그 심의회의 일시 및 장소를 심의회의 개최일 5일 전까지 신청인 또는 청구인에게 문서 또는 전자적 방법(홈페이지 게시, 문자메세지 전송, 이메일 통지)에 따라 알려야 한다.

6. 이해관계인의 권익보호 강화

【참고】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위원회 운영 공개) 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5조에 따라 위원회의 현황 및 활동내역서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 정보통신망이나 정부간행물 등을 통하여 국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6. 이해관계인의 권익보호 강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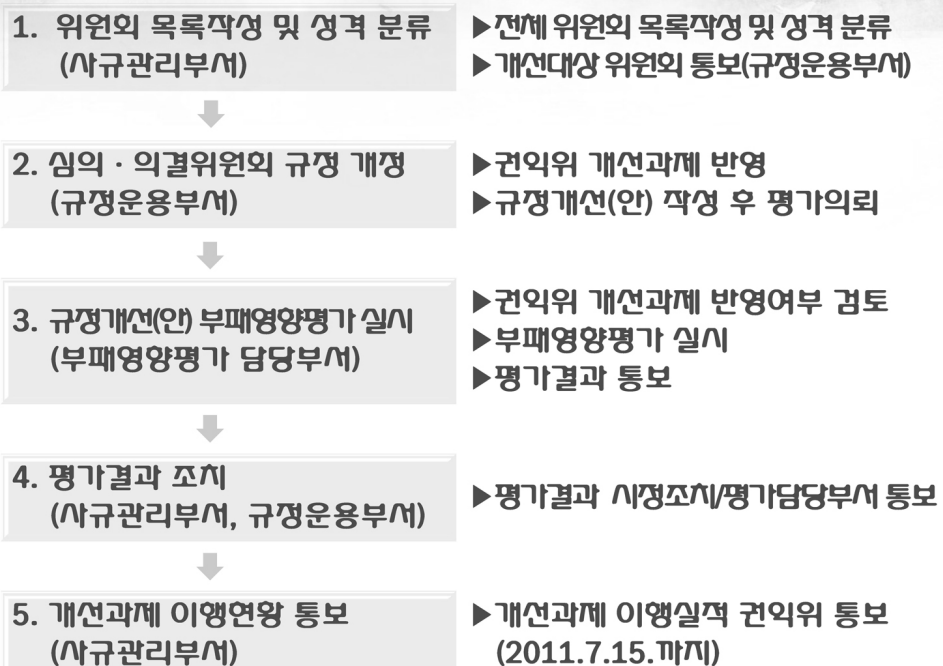
【우수사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1조의2(약제 요양급여의 결정) ① 제10조의2제3항에 따라 약제에 대한 평가를 신청받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은 150일 이내에 제9항에 따른 약제급여평가위원회(이하 "약제급여평가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평가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평가결과
2. 평가결과에 대한 이견이 있으면 30일 이내에 재평가를 신청할 수 있다는 내용
3. (생략)

Ⅲ. 개선과제 이행요령

개선과제 이행업무 흐름도



◆개선과제 세부 이행지침

1. 위원회 성격 분류 후 개선대상 위원회 선정·통보 [사규관리부서]

- ▶ 각종 위원회의 성격 전면 검토
 - 의결위원회, 심의·조정위원회 등 4가지로 분류
 - 명칭 불문/법령, 의사결정의 효력, 필요성 등 검토
- ▶ 의결위원회 및 심의·조정위원회 : 개선대상
 - 해당 위원회목록 규정운용부서에 통보
 - ※ 대내적 영향력이 있는 위원회는 자체개선 검토

◆개선과제 세부 이행지침

2. 각 심의·의결위원회 규정에 개선과제 반영 [규정운용부서]

- ▶ 「위원회 표준규정」 운용 기관 : 표준규정 개정
 - 위원의 자격요건 등 표준규정으로 규정할 수 없는 개선과제와 과제별 세부내용은 개별 규정에 반영
- ▶ 위원회 성격별로 권익위 개선과제 규정화
 - '의결위원회'/'심의·조정위원회' : 구체화
 - '순수자문위원회'/'내부방침결정위원회' : 자체 검토

◆개선과제 세부 이행지침

3. 규정개선(안)에 대한 부패영향평가 실시 [부패영향평가 담당부서]

- ▶ 위원회 규정개선(안) 접수 → 권익위 개선과제 반영
여부 검토 → 부패영향평가 실시
 - 원안동의
 - 개선 요구
 - 추가 개선과제 반영 요구

◆개선과제 세부 이행지침

4. 평가결과 조치 [부패영향평가 담당부서]

- ▶ 부패영향평가 결과 시정조치 이행
→ 부패영향평가 담당부서에 이행결과 통보

5. 개선과제 이행현황을 권익위에 통보 [사규관리부서]

- ▶ 위원회 규정 개선과제 이행실적 취합/권익위에 통보
※'11.6월30일 : 이행완료/11.7월15일 : 실적제출

